인사규정 개정에 이견 없이 동의함
2018.8.21

케이티 노동조합

위원장 김 해 관


## [인사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]

| 현 행 | 개 정 | 비 고 |
| :---: | :---: | :---: |
|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주식회사 케이티(이하 '회사'라 한다) G직, C직, A직 및 Sales직 직 원 (이하 '직원'이라 한다) 에 적용할 인사관리의 근본기준과 절차를 <br> 정하여 <br> 능률적이고 <br> 합리적인 인사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주식회사 케이티 (이하 '회사' 라 한다) G 직, A 직 직원 (이하 '직원'이라 한다) 에 적 용할 인사관리의 근본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능률적 이고 합리적인 인사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[개정내용] <br> C,Sales 직의 G 직 전환에 따라 삭제 |
| 제 3 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<br> 1. 'G직'이라 함은 상무보 미만 직위의 직원 중 C직, A직, Sales직 및 계약에 의해 채용된 직원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. <br> 2. ' C 직'이라 함은 고객접점분야에서 회사 상품의 개통과 $\mathrm{A} / \mathrm{S}$ 및 판매를 전문적이고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직원을 말한다. <br> 3. 'A직'이라 함은 해외고객 및 국내 공공고객, 대형기업고객 대상으로 영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직원을 말한다. <br> 3의2. 'Sales직' 이라 함은 국내 유통영업 및 고객 리텐션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직원을 말한다. | 제 3 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<br> 1. 'G직'이라 함은 상무보 미만 직위의 직원 중 A 직 및 계약에 의해 채용된 직원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. <br> 2. 〈삭제 2018.XX.XX> <br> 3. 'A직'이라 함은 해외고객 및 국내 공공고객, 대형기업고객 대상으로 영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직원을 말한다. | [개정내용] <br> C,Sales 직의 G <br> 직 전환에 따라 <br> 삭제 <br> A 직 환직 관련 <br> 내용 수정 |


| 현 행 | 개 정 | 비 고 |
| :---: | :---: | :---: |
| 4．～5．〈생략〉 <br> 6．＇환직＇이라 함은 G 직을 A 직으로 임명하는 것과 G직에서 A직으로 임명한 직원을 다시 G직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． | 4．～5．〈생략〉 <br> 6．＇환직＇이라 함은 G 직을 A 직으로 임명하는 것과 A 직을 G 직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． |  |
| 제 12 조（전직과 환직）회장은 각 급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직원을 환직시킬 수 있다．이 경우 환 직기준，자격요건，절차 등에 관하여는 회장이 따 로 정한다．다만 A 직으로 채용된 자는 환직할 수 없다．＜개정 2014．04．11（시행 2014．05．01）＞ | 제 12 조（환직）회장은 각 급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직원을 환직시킬 수 있다．이 경우 환직기준，자 격요건，절차 등에 관하여는 회장이 따로 정한다．＜ 삭제＞ | ［개정내용］ <br> A 직 환직전환 불가 내용 삭제 |
| 제24조（직권면직）인사권자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．다만，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직권면직 시키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한다． <br> 1．～5．〈생략〉 <br> 6． 2 회 이상＇대기발령＇시 | 제24조（직권면직）인사권자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． 다만，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직권면직 시키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한다． <br> 1．～5．〈생략〉 <br> 6．－〈삭제＞ | ［개정내용］ <br> 저성 과자 <br>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 관련 삭제 |


| 현 행 | 개 정 | 비 고 |
| :---: | :---: | :---: |
| 제27조(희망퇴직) (1) 회장은 인력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등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퇴직희망자를 모집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직 시킬 수 있다. <br> (2)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희망자의 대상직종, 자격 기준 등에 관하여는 회장이 따로 정한다. | 제27조(희망퇴직) (1) 회장은 인력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등 경영합리화 또는 직원의 경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퇴직희망자를 모집하여 인사위원 회 심의를 거쳐 퇴직시킬 수 있다. <br> (2)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희망자의 자격기준, 방법, 절차 등 세부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. | [개정내용] 희망퇴직 제도 대상 확대로 사유를 추가 |
| 제 37 조 (대기발령) <br> (1) 제 24 조 <br> 제 6 호의 <br> ‘대기발령' 이라 함은 2 년 연속 성과평가 및 역량평가 최하등급을 받은 직원 중 업무실적이 직원 평균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에 한한다. <br> (2) 제 24 조 제 6 호의 대기발령 시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교육훈련 제공 등 생산성과 실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. <br> (3) 제 24 조 제 6 호의 대기발령에 대한 세부기준, 절차, 생산성 향상 방법 등에 관하여는 회장이 따로 정한다. | 제37조(대기발령) <삭제 2018.XX.XX> | [개정내용] 저성과자 대기발 령 및 직권면직 관련 삭제 |
| 제41조(직급) G직의 직급서열은 G5 내지 G1, A직 의 직급서열은 A 5 내지 $\mathrm{A} 1, \mathrm{C}$ 직의 직급서열은 C 5 내지 C 1 , Sales직의 직급서열은 S 5 내지 S 1 으로 한다. | 제41조(직급) G직의 직급서열은 G5 내지 G1, A직 의 직급서열은 A 5 내지 A 1 으로 한다. | [개정내용] <br> C ,Sales 직의 G 직 전환에 따라 삭제 |


| 현 행 | 개 정 | 비 고 |
| :---: | :---: | :---: |
| 41조의 2（호칭） G 직， A 직， C 직 및 Sales 직의 호칭 은 직급서열에 따라 부장，차장，과장，대리，사원 으로 한다． | 41조의 2（호칭） G 직， A 직의 호칭은 직급서열에 따라 부장，차장，과장，대리，사원으로 한다． | ［개정 내용］ <br> C，Sales 직 의 <br> G 직 전환에 <br> 따라 삭제 |
| 제 44 조（승진의 제한）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의 승진은 제한할 수 있다． <br> 1．〈생략〉 <br> 2．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<br> 가．감봉： 12 개월 <br> 나．견책： 6 개월 <br> 3．〈생략〉 | 제 44 조（승진의 제한）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의 승진은 제한할 수 있다． <br> 1．〈생략〉 <br> 2．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<br> 가．정직 ： 18 개월 <br> 나．감봉 ： 12 개월 <br> 다．견책：6개월 <br> 3．〈생략〉 | ［개정내용］ <br> 정직이 종료된 날 로부터 18 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승진 제한 규정 추가 |

※ 부칙（2018．XX．XX）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．다만，제 1 조，제 3 조 제 1 호，제 2 호 및 제 3 의 2 호，제 41 조，제 41 조의 2 의 개정규정은 C직 및 Sales직 직원의 G 직 전환이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．

